

의안번호	제 269 호
의결년월일	1995. 4. 7. (제 32 회)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년월일	1995. 3. 27.

#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인번호	269
------	-----

제출연월일 : 1995. 3. 27.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 1. 제안이유

지방세무기구·인력보강지침(내무부, '95. 2)에 의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무수익의 안정적 확보관리와 지방세무 부정방지를 위한 지방세정개혁대책의 후속조치로 읍면의 부과등 주요 세정기능을 군으로 이관하여 세무행정을 군이 실질적·직접적으로 수행하게 하며 부과·징수업무도 분리 수행토록 종전 재무과의 세정계를 폐지하고 부과계와 징수계를 두도록 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 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읍면의 세무인력 6명(지방세무주사보 4명, 지방세무서기 1명, 지방세무서기보 1명)을 감축하여 본청 재무과에 인력 6명(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1명,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세무주사보 3명,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세무서기 2명)을 복수직으로 보강함(안 제2조제1호 및 제4호).

## 3. 참고자료

지방12200~192('95. 2. 21) 지방세무기구인력 보강지침참조

## 4. 본 문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청 : 231 명

4. 읍면 : 288 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생략)</p> <p>1. 본청 : 225명</p> <p>2. 직속기관 : 92명</p> <p>3. 사업소 : 17명</p> <p>4. 읍면 : 294명</p>	<p>제2조(정원의 총수) (현행과 같음)</p> <p>1. 본청 : 231명</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읍면 : 288명</p>